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8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	2
※ 참고자료	6
1.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6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보전 사업 체계도	8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9일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2024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①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식지 주변의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 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u><신 설></u>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 보호 등을 ----- ----- ----- ----- ---. ④ 환경부장관은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주변의 보호림 설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¹⁾²⁾.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종 증식·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과 정밀한 서식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2) <참고자료1.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단위 : 종)

년도	합계	멸종위기 I 급	멸종위기 II 급	비고
2022~현재	282	68	214	2022.12.개정

※ 출처: 환경부

다만, 최근 강설 패턴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먹이 부족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산양이 폐사⁵⁾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산양 폐사 현황]

○ (연도별 멸실신고 현황)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4	97	46	53	103	1,042

○ (2024년 지역별 폐사 현황)

(단위: 건)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삼척	속초	양양	울진	강릉	기타	합계
313	262	170	101	54	51	29	24	10	28	1,042

※ 자료: 환경부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참고자료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보전 사업 체계도 >

5)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평년 대비 많은 폭설('23.12.~'24.2. 기간 월평균 강수량 72mm, 예년(16.85mm)에 약 4.3배, 강설일수 26일, 최근 5년 평균 13.4일, 10년 평균 11.7일에 비해 약 2배)로 인해 서식지 지표면 식생층이 동결된데 따른 충분한 먹이활동 제한과 먹이활동을 위해 저지대로 이동 중 탈진 후 폐사를 주(主)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함.

이에 개정안은 ①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식지 주변의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 수립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조문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⁶⁾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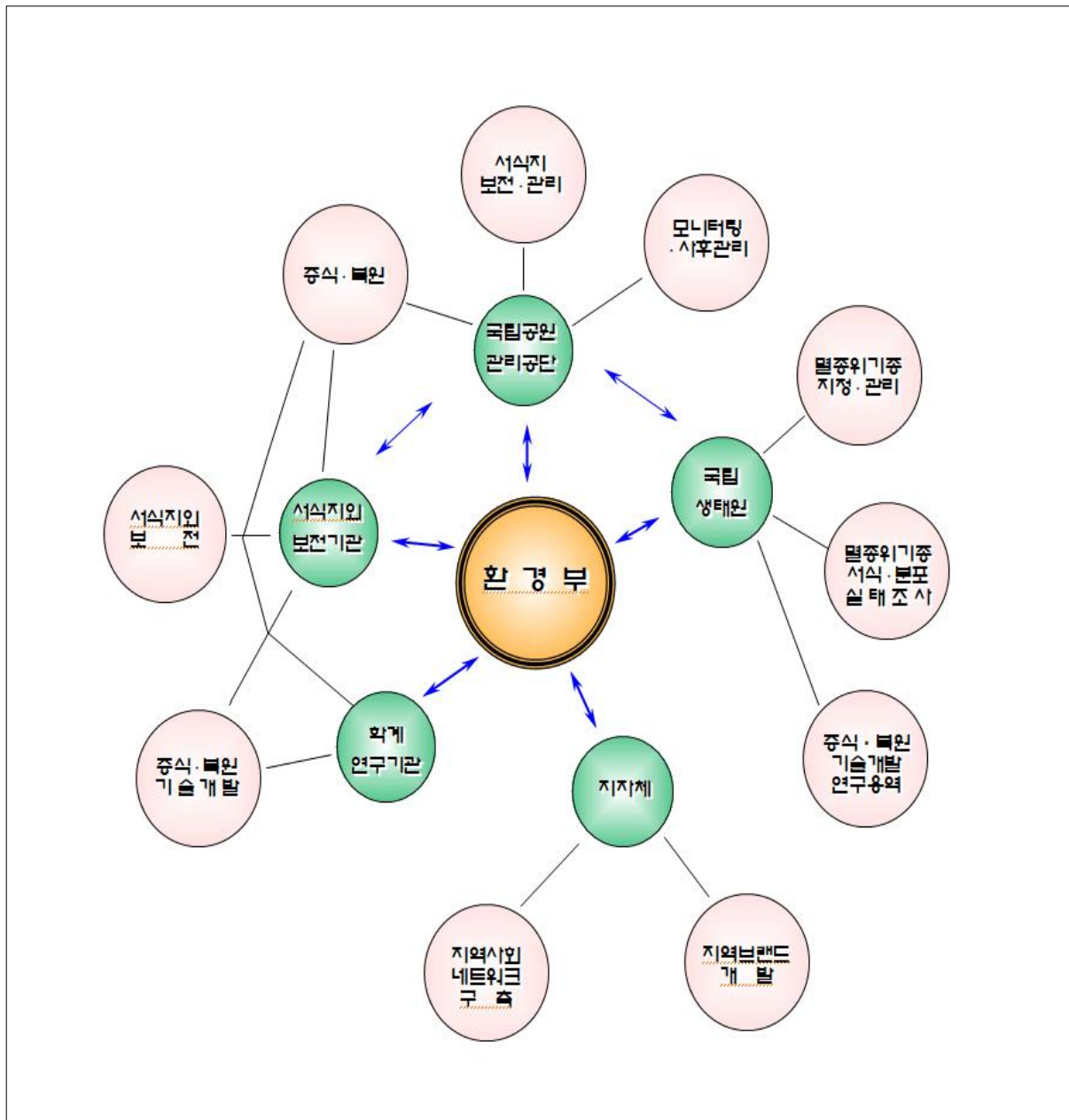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구 분	생 물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68종)	
포유류 (14종)	늑대, 대륙사슴,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관코박쥐, 표범, 호랑이
조 류 (16종)	검독수리, 고니,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느시, 두루미, 먹황새, 뿔제비갈매기,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호사비오리, 흑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양서류·파충류 (2종)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어류 (11종)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줍수수치, 통사리, 흰수마자
곤충류 (8종)	닷무늬길앞잡이,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무척추동물 (4종)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육상식물 (13종)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 제주고사리삼, 죽백란, 탐라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214종)	
포유류 (6종)	담비, 물개, 삥,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조류 (53종)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족새, 검은목두루미,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따오기, 뜰부기, 매,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가슴흰죽지,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썩새, 쇠제비갈매기, 수리부엉이, 시베리아흰두루미,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재두루미, 잣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청호반새,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뒷부리도요, 큰말뚝가리, 팔색조, 향라머리 검독수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양서류·파충류 (6종)	고리도롱뇽,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꽂이, 표범장지뱀

구 분	생 물 종
어류 (18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깍저기, 꾸구리, 다묵장어, 돌상어, 독중개, 묵납자루, 버들가지, 부안중개, 새미,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칠성장어,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한독중개
곤충류 (21종)	깊은산부전나비, 노란잔산잠자리,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똥보주름메뚜기, 멋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물장군, 불나방,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소똥구리,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 표범나비, 윤조롱박딱정벌레, 은줄팔랑나비, 참호박뒤영벌,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자색 호랑꽃무지, 한국꼬마잠자리, 홍줄나비
무척추동물 (28종)	갯게, 거제외줄달팽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둥,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물거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뚝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맴시산호, 칼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육상식물 (79종)	가는동자꽃, 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 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범의귀, 나도승마, 나도여로,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눈썹고사리, 단양쑥부쟁이,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홍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물석송,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분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깃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모시대,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손바닥난초, 솔잎난,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평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장백제비꽃, 전주물꼬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겉이란, 참땃꽃, 참물부추,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한라장구채, 해오라비난초, 흑난초, 홍월굴
해조류 (2종)	그물공말, 삼나무말
고등균류 (1종)	화경솔밭버섯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보전 사업 체계도



※ 출처: 환경부